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및 인식제고 지원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5명(6급 5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 인력 16명(5급 10명, 6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상표 심사 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심판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 2명(6급 2명)을 특허청으로 재배정하고, 정보고객지원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특허분석과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특허청의 정원 2명(4급 1명, 8급 1명) 및 특허심판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9급 1명 및 4급 1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특허심사 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의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특허청 하부 조직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산업재산권 금융 관련 유관기관 협력

4의4.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 수립·운영

4의5.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5의2. 산업재산권 투자활성화 정책 수립

제8조제5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

12.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3.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이하 “특허 빅데이터”라 한다)의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5. 특허 빅데이터의 분석·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제8조제8항제1호 중 “창출·활용·보호 및 이에 기반한 특허기술 사업

화”를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사업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특허사업화”를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지원”으로 한다.

2.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3.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4.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5.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

6.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7.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8. 아이디어 창출·활용·보호 및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9.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제9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1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작성·종합”을 “작성·분석·종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관리”를 “관리·개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10호 중 “「특허협력조약」에 따른”을 “국제출원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제9호의2 및 제9호의3으로 한다.

3.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

8의2. 「청원법」에 따른 청원제도 운영 및 관리

21의2.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분석·활용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제12조제2항 중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특허분석과를”을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로, “기술서기관으로, 특허분석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제7호의2 중 “발명교육센터”를 “국가발명인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확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진”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603”을 “1,602”로 하고, 일반직 계 “1,601”을 “1,60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00”을 “792”로 하고,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00”을 “409”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를 “1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9”를 “2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03”을 “1,602”로 하고, 일반직 계 “1,601”을 “1,60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8”을 “37”로 하고,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4”를 “817”로 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74”를 “383”으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를 “18”로 하고, 운전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9”를 “2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0”을 각각 “147”로 하고,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0”을 “19”로 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를 “10”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를 각각 “32”로 하고,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을 “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3”을 각각 “22”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4”를 각각 “2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

보 “3”을 “2”로 한다.

별표 9 나목 2) 및 3)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허 심사업무	4명 (6급 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3명 (6급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

조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별표 8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
·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2024년 12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9급 1명, 관리운영 9
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2.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 4. 4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생략) <u><신설></u> 6. ~ 9. (생략)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u>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삭제></u> <u><삭제></u> <u><삭제></u> 4. 4의2. (현행과 같음) <u>4의3. 산업재산권 금융 관련 유관기관 협력</u> <u>4의4.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 수립·운영</u> <u>4의5.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u> 5. (현행과 같음) <u>5의2. 산업재산권 투자활성화 정책 수립</u> 6. ~ 9. (현행과 같음) ⑤ ----- -----. 1.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및 사업화 촉진 지원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의2. (생략)

6의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6의4.·7. (생략)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 10.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1. (생략)

⑧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은 다

⑥ -----
-----.

1. ~ 6의2. (현행과 같음)

<삭제>

6의4.·7. (현행과 같음)

⑦ -----
-----.

1. ~ 7. (현행과 같음)

11.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

12.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
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3.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
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이하 “특허 빅데이터”라 한
다)의 분석·활용에 관한 계
획의 수립·시행

15. 특허 빅데이터의 분석·활
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16. (현행 제11호와 같음)

⑧ -----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이디어 창출·활용·보호
및 이에 기반한 특허기술 사
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2. 아이디어 거래 보상기준 등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3.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의 구
축·운영
4. 아이디어 거래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5.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이하 “혁신특허”라 한다)
의 발굴 및 사업화 촉진
6. 혁신특허 사업화에 관한 제
도 연구 및 실태조사
7. 혁신특허 사업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진
흥기반 조성

<신 설>

<신 설>

-----.

1. ----- 경제 활성화 및 특허
기술 거래·사업화 -----

2.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
의 촉진
3.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4.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산업
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
술이전·사업화 지원
5.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
6.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7.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
품의 판로개척 지원
8. 아이디어 창출·활용·보호
및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촉
진을 위한 제도 연구
9.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
·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
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

8. 그 밖에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u>특허사업화</u>에 관한 사항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 ② (생략)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 설></u> 10. (생략) ④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산업재산권 분쟁조정</u>에 관한 사항 9. ~ 11. (생략) ⑤ ~ ⑨ (생략) 제10조(정보고객지원국) ① · ② (생략) ③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u>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u>	<u>성</u> 10. ----- ----- <u>특허기술 거래·사업화</u> <u>지원</u>----- -----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산업재산권 분쟁조정</u>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 11.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보고객지원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u>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u>
--	---

<u>의 지정 및 지도·감독</u> 4.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u>작성·종합</u> 및 지식재산통계 연보의 발간·배포 5. ~ 8. (생략) <u><신설></u> 9. 삭제 10. ~ 20. (생략) 21. 청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u>관리</u> 등 총괄 <u><신설></u> 22. (생략) ④ ~ ⑧ (생략) ⑨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u>특허협력조약</u>」에 따른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u>10의2.·10의3.</u> (생략) 11. (생략)	<u>·감독</u> 4. ----- <u>작성·분석·종합</u> ----- ----- 5. ~ 8. (현행과 같음) <u>8의2. 「청원법」에 따른 청원 제도 운영 및 관리</u> 10. ~ 20. (현행과 같음) 21. ----- ----- ----- <u>관리·개방</u> ----- -- <u>21의2.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분 석·활용 모델 개발 및 인프 라 구축</u> 2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9. (현행과 같음) 10. <u>국제출원 관련</u> ----- ----- <u>9의2.·9의3.</u> (현행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	--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생략)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특허분석과를 두며, 특허심사총괄과장, 특허제도과장, 생활용품심사과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주거기반심사과장 및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특허분석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⑪ (생략)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제
특허출원심사2팀을 -----

----- 기술서기관-----

-----.

③ ~ ⑪ (현행과 같음)

⑫ 특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이하 “특허 빅데이터”라 한다)의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별 특허 빅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관리
3. 특허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
4. 특허 빅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운영
5. 특허 빅데이터의 분석·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

② (생략)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7의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8. ~ 14. (생략)

④ (생략)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삭 제>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국가발명인재관-----
--

8.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분장한다.

1. · 2. (생략)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이러닝(e-learning) 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개발

3의2. (생략)

4.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

5. 그 밖에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 ③ (생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특허

-----.

1. · 2. (현행과 같음)

3. -----

연구·개발·확산

6.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 시행

5.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단서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허분
석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
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
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
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삭 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3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산업통
상자원부령 제2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
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
축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8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
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2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3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 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2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별표 4의 정원 1명(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
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으
로 본다.

신 · 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603</u>		<u>1,602</u>	-1
일반직 계	.		.		.	
	.		.		.	
	.		<u>1,601</u>		<u>1,600</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00</u>		<u>792</u>	-8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400</u> · ·	<u>409</u> · ·	+9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 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u>19</u> · ·	<u>18</u> · ·	-1
사무운영서기보 · ·	<u>29</u> · ·	<u>28</u> · ·	-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03	1,602	-1
일반직 계	1,601	1,600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8	37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4	817	-7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374</u> · ·	<u>383</u> · ·	+9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u> <u>·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u> <u>신서기 또는 운전서기</u>	<u>1</u>	<u><삭 제></u>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 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9</u>	<u>18</u>	-1
운전서기보	<u>2</u>	<u>3</u>	+1
사무운영서기보	<u>29</u>	<u>28</u>	-1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50</u>	<u>147</u>	-3
일반직 계	<u>150</u>	<u>147</u>	-3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0</u>	<u>19</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12</u> · ·	<u>10</u> · ·	-2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34</u>	• <u>32</u>	-2
일반직 계	<u>34</u>	<u>32</u>	-2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8</u>	<u>6</u>	-2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3</u>	<u>22</u>	-1
일반직 계	<u>23</u>	<u>22</u>	-1
·	·	·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 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 보·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 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u>	<u>2</u>	-1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4</u>	<u>23</u>	-1
일반직 계	<u>24</u>	<u>23</u>	-1
·	·	·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 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 보·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 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u>	<u>2</u>	-1
·	·	·	
·	·	·	